

## JHC 정책 요약—아동 학대와 아동 방치

Montgomery County 교육위원회는 ‘정책 JHC-아동 학대와 아동 방치 수정안’에 대한 여론을 듣고자 합니다. 이 정책은 아동 학대와 아동 방치 인지, 보고, 예방에 대한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의 절차와 규약을 이끌어내는 규정입니다.

교육 위원회는 정책의 재수정을 2015년 4월 27일(월)에 승인하였으며 2015년 6월 8일까지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2015년 6월 29일 회의에서 수정 정책의 최종 승인을 할 예정입니다.

갱신된 JHC 정책의 개요는 전략적으로 다음 사항이 확실히 이루도록 합니다.

1. 모든 교직원 및 교육구 고용인은 업무시 높은 수준의 윤리기준을 이해하고 실행 및 적용하며, 아동 학대와 아동 방치를 인지, 보고, 예방하도록 법적 의무와 도덕적 의무를 따릅니다.
2. 학대 및/또는 방치의 피해자인 아동과 약한 성인이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3. 새로 고용되는 직원과 고용 중인 직원들을 검토하는 인사관리 시스템과 과정을 개발합니다.
4. MCPS 직원을 위한 전문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합니다.
5. 학부모, 외부 계약자, 자원봉사자, 폭넓은 지역사회원들에게 아동 및 약한 성인 학대와 방치 인지, 보고, 예방에 관한 각성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책에 대한 의견을 우편 또는 이메일,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소로 우송 하거나 (주소: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Schools, 850 Hungerford Drive, Rockville, Maryland 20850) 교육위원회로 이메일해 주십시오. (이메일:boe@mcpsmd.org) 여러분의 모든 의견을 교육위원회와 임시 교육감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추가 상황 이해를 위해 MCPS는 정책 재검토를 위한 규정 초안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개요

#### 아동 학대와 아동 방치에 대한 보고와 대응

갱신된 정책에는 MCPS 교직원, 계약 직원, 자원봉사자는 모두 아동 학대 또는 아동 방치가 의심될 경우 바로 아동보호 서비스(Child Protective Services-CPS)에 보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 전에 아동 학대 또는 아동 방치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MCPS 교직원, 계약 직원,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학대나 방치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실수로 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MCPS 교직원, 계약 직원, 자원봉사자라고 주장할 경우, 피해자와 다른 아동의 안전에 대한 행동지침이 CPS를 포함한 카운티 파트너십 기관, Montgomery County Police Department(MCPD)와 Montgomery County 검사실과의 상의를 통해 작성됩니다. 카운티 기관이 의심되는 학대에 대한 수사를 실행하게 됩니다. MCPS 내부 감사는 이 경우, CPS, MCPD 또는 외부기관의 조사를 방해 또는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MCPS 내부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비밀유지, 면제, 보복으로부터의 보호

MCPS 고용인, 계약 직원, 자원봉사자는 학대 또는 방치 혐의를 보고 전, 고의적으로 이를 예방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의도로 학대, 방치 혐의 또는 혐의 검사에 참여를 보고하는 사람은 누구나 Maryland 법으로 면제를 받습니다. MCPS 는 학대 또는 방치를 보고한 사람을 누구나 협박, 학대,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고 법에서 보고처를 요구하지 않는 한, 보고자의 비밀을 유지합니다.

## 아동학대와 방치 보고를 고의적으로 안 할 경우와 보고를 방해할 경우에 따르는 결과

아동 학대, 아동 방치를 발견한 MCPS 교직원, 계약 직원, 자원봉사자 중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를 막은 사람은 누구든지 징계를 받게 됩니다. 징계에는 직무에서의 휴직 또는 해고, 계약업무의 계약 해지, 봉사 기회 박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메릴랜드 주 법에 따라 증명서나 자격증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 아동 학대와 아동 방치에 대한 방어에 대한 결과

MCPS 가 교육구 직원, 계약직원, 자원봉사자가 아동 학대나 아동 방치에 연루될 경우, 연루된 자는 메릴랜드 법에 따라 해고 또는 정지, 계약의 해지 및 봉사 기회의 발탁, 증명서나 자격증의 발탁을 포함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 시행

이 정책의 시행에 따라 MCPS 는:

1. 카운티 협력기관(CPS, MCPD, 주 검사실)과의 이해 각서 체결에 따라 아동 학대와/및 아동 방치 보고 절차와 아동 학대 및 아동 방치 혐의 조사에 대한 절차를 책정하였습니다.
2. MCPS 아동 학대 담당자는 학대 피해자인 학생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연락하고 과정을 책정합니다.
3. MCPS 교직원의 정책 이해와 적용을 돕기 위해 계약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과 트레이닝, 정보제공의 기회가 적절하게 제공됩니다.
4. 학교에서 학생과 직, 간접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모든 새로 고용되는 직원과 고용 중인 직원, 외부 계약 직원, 자원봉사자를 검토하고 심사하는 과정을 개발합니다.
5. 책임 있는 행동과 성인과 학생 간의 적절한 행동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함께 MCPS 교직원에게 대한 MCPS 행동규범과 다른 행동지침을 개발합니다.
6. 학부모와 후견인 그리고 지역사회원과 학생을 교육하여 아동 학대와 아동 방치에 대한 각성을 향상시킵니다.

## 검토와 보고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며 추가로 다음을 포함한 적절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1. MCPS 가 법기관 그리고/또는 보호서비스 기관에 보고한 의심되는 아동 학대 또는 아동 방치의 케이스.
2. JHC 정책에 개요가 서술된 전략의 적용.
3. 아동 학대와 아동 방치에 대한 MCPS 와 카운티 협력기관 간의 협동 노력에 대한 정보.